

# 예산총칙

2025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109,548,847	63,286,465
일반회계	1,862,895,020	55,886,851
특별회계	246,653,827	7,399,615
공기업특별회계	180,774,173	5,423,225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342,272	610,26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6,056,218	1,981,68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4,375,683	2,831,270
기타특별회계	65,879,654	1,976,390
주택사업특별회계	183,031	5,491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5,762,650	172,880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4,348,773	130,463
교통사업특별회계	29,620,665	888,62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4,337,859	730,136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462,107	43,86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64,569	4,937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938,759천 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0,3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8 조 금회 추가경정예산 제출 후 통보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포함)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